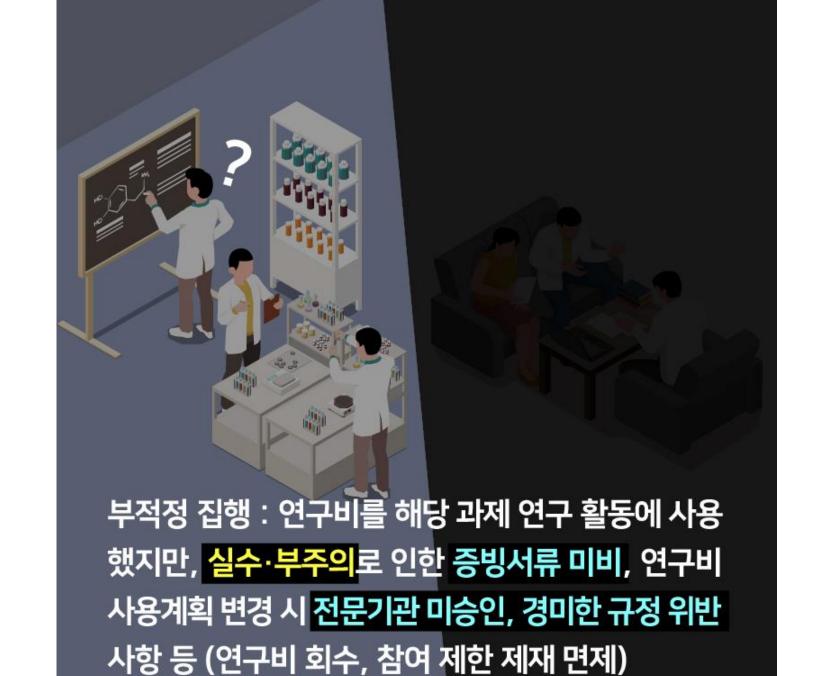
#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



2024. 1.

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





부정집행: 고의성을 가지고 서류조작, 업체와 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(연구비 회수,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기간 발생)

## 1. 인건비

- 3책 5공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에서 전임교원 인건비 수령
- 참여율 100%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
- 참여연구원 개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경우
- 인건비로 원래 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경우
-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
- 연구지원부서 인력을 내부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 지급한 경우

# 1. 인건비

#### 3책 5공

'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1항' 으로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할 경우 책임자로 3개, 공동으로 5개가 최대

# 2. 회의비

-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
- 유흥 경비(주류 등)가 포함된 경우 (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주점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 포함)
- 10만 원 초과 회의에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 이 없는 경우
-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회의비
- 회의비를 바로 결제하지 않고 외상 후 여러 건의 회의비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
-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
- <mark>출장허가원 없이</mark> 다른 지역에서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
- 심야시간대 집행 불가(오후 11시 이후)
- 회의 식대 후 별도 차류 등 추가 집행 불가
- 같은 날 2회 이상 다른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집행 불가
- 외부기관 참석 및 사전 내부결재 없이 집행불가(국가연구과제일 경우)

# 3. 연구시설, 장비, 재료비

- 해당 과제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자재나 재료 구매
- 소진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기자재 또는 재료 구매
- 주관, 공동, 위탁 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
- 최종(단계) 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 및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- 연구계획서 예산에 미계상된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 연구 장비, 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
-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구매한 3천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 장비
- 연구책임자가 특정 업체와 모의하여 납품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한 허위 영수증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를 받은 경우

## 4. 연구 활동비

-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수정 직접비(현물, 위탁연구비개발 제외)의 40%를 초과 하여 집행한 경우
- 지식재산권의 출원, 등록, 유지비는 집행 불가
- 전문가 활용비를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 과 같은 소속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(단,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존재 시에는 예외)
-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
- 출장비 지급 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및 <mark>회의비</mark>
-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력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거나 과제 수행과 관련성 없는 여비, 회의비, 세미나 참가비 등

#### 5. 연구수당

- 1인에게 연구수당 총액의 7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(참여연구원 1인 과제는 제외)
- 기여도 평가 서류 미비, 평가 내용이 비합리적인 경우
- 인건비를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 집행 인건비 (현물·미지급 인건비 포함)의 2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
-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
- 연구수당을 인건비와 통합하여 지급한 경우
-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포함)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
- **참여 인력이 아니거나**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
- 연구 시작 시점에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(1개월 이내)

#### 6. 위탁연구 개발비

-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<mark>직접비의 40%를</mark> **초과**하여 예산 계상 또는 집행한 금액

- 사전 승인 없이 **연구계획서 대비** 위탁연구 개발비를 **20% 이상 증액**한 경우

### 7. 식대

- 야근 식대 : **평일 오후 5시~11시**까지 집행 가능
- 출장비 지급 시기와 중복된 식대 청구
- 국외 및 국내 출장비를 받고 실비로 식대 를 집행한 경우
- 1인당 1만 5천 원을 초과하는 야근 식대
- 연구실과 통상적으로 <mark>멀리 떨어진 장소</mark> 에서 야근 식대 사용